환경영향평가 제10권 제3호(2001) pp.195~209

環境影響評價法의 體系定立에 관한 硏究*

鄭 然 萬
環境部 總務課長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the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Jeong, Yeon-Man
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plans for re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s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s of EIA related law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Korean situation to EIA system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integrate all EIA related systems scattered over several laws into one comprehensive EIA law, and also to develop legal procedure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tegrated EIA law. Therefore, I propose four reforms ① All EIA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comprehensive EIA act. ② Administrative plans and policies, though environmentally harmful, which are not currently subject to any prior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covered by the prior consultation system. ③ A screening or scoping should be adopted. ④ Widen civil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enforcement and introduction of group litigation or citizen suits would be considered.

Key word : comprehensive EIA law, prior consultation system, screening, scoping, civil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control enforcement, group litigation or citizen suits.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논문임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事後 監督이나 汚染處理技術 開發만으로는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限界를 克復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事前豫防次元의 環境影響評價制度가 탄생, 발전되어 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수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10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制度와 個別法 및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性檢討制度로 多元化되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예방기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環境影響評價制度를 一元化함과 아울러 일원화된 법체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節次의 效率性 提高方案을 강구코자 한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연구에서는 일원화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보다 발전시킴과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평가대상 선정방법의 개선을 위해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방안과 평가항목 및 범위선정방법의 개선을 위해 스코핑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단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자료분석, 기존의 연구자료, 기존 주요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미국, 일본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II. 韓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 및 關聯法 體系

1.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槪要

환경영향평가제도라 함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동 제도는 環境法의 基本原理[2)] 중에서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事前配慮의 原則[3)]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環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計劃, 事業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開發과 保全의 調和次元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事業計劃의 樹立課程에서 事業者 스스로가 환경측면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計劃技法의 일종으로 事前豫防的機能[4)]과 利害調整機能[5)] 등을 수행하나 미래예측의 어려움[6)], 환경수치의 계량화 곤란[7)] 등으로 일정한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의 환경영향제도는 個別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事前協議制度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事前協議制度, 그리고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制度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사전협의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라고도 하며 외국에서는 주로 전략환경평가제도로 불리우고 있다.

2. 環境影響評價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度

먼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77년 12월에 제정·공포된 環境保全法에서 최초에 동 제도가 법률에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명칭이 다르고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하여서였지만, 환경영향평가에 가까운 노력은 公害防止法下에서도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상 문제 노출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강화여론으로 계속 제도가 補完·發展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영향의 特性別로 分法化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環境政策基本法 제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1993년 6월 11일에는 單一法으로서 環境影響評價法이 제정되게 된다. 그렇지만 유사제도의 통폐합 차원에서 1999년 12월 31일 "環境·交通·災害 등에 관한 影響評價法"으로 통합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체제와 내용은 변함이 없기에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다.[8)]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은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이 Positive List 방식으로 동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評價項目은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住民參與를 위해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제도를 두고 있다.

3. 環境性檢討制度

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80년 環境廳 發足으로 個別法令에 의해 部處協議次元에서 環境性檢討制度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협의대상행정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등 8개 부처 소관의 32개 법에 의한 62개이었다.[9)]

그리고 1993년 1월 7일에는 環境政策基本法施行令 제3조 제1항의 사전협의규정에 의해 國務總理訓令을 제정, 일정보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 공공개발사업에 대하여도 環境性檢討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총리훈령이 가지는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분별한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環境政策基本法에 事前協議條項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사전협의대상의 종류·규모, 시기 및 방법 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個別法에 의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行政計劃이 追加로 협의대상에 包含되었고, 旣存 事前協議對象 行政計劃중 29개 주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시 필요한 書類를 具備토록 했으며, 주요 보전지역의 일정규모이상 20개 開發事業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대상을 제외하고 個別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행정계획은 현재 30개 법에 의한 51개 행정계획이다.

III. 外國의 環境影響評價法制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법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라별 立法體系와 行政文化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주민참여, 스코핑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먼저 立法體系面에서 볼 때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獨立된 環境影響評價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비해 미국과 네덜란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지 않고 環境關聯法制에 環境影響評價條項을 마련하고, 그 하위법령은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EU지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評價對象範圍 등에 있어 일부 類似點이 있으나 評價對象 選定方法 등에 있어서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첫째, 評價對象에 있어 對象의 設定方法이나 範圍가 相異하다. 먼저 평가대상의 설정방법에 있어 美國은 國家環境政策基本法에서 개별적인 대상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免除事業과 除外事業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除外한 聯邦政府의 모든 行爲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0]

獨逸의 경우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여 16개 분야의 事業種類를 關係法令에 규정하고 있으며[11], 日本이나 네덜란드는 對象範圍를 二元化하여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환경영향평가령 부속서 C, D에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 C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27종 69개의 公共 및 民間事業을 대상으로 하나, 부속서 D사업은 主務官廳의 許可基準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결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30종 68개의 공공 및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日本도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제1종사업과 제2종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제1종사업은 반드시 環境影響評價對象이 되나, 제2종사업은 豫備評價를 통한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環境影響評價對象與否를 決定하고 있다.[13] 美國은 법에 명시된 免除事業과 除外事業을 除外하고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日本과 네덜란드는 제2종사업 및 부속서 D사업에 대하여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나 獨逸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주요정책, 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戰略環境影響評價의 경우 미국은 立法案, 政策, 計劃,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평가대상에 包含하고 있으므로 가장 대상범위가 넓은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主要 政策과 行政計劃에 대하여만 운영하고 있음에 비해, 독일과 일본은 一部行政計劃에 대하여만 운영하는 初步的인 段階에 있으나, 自治團體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어 점차 확대되어 가리라고 본다.

둘째, 評價項目의 種類와 範圍는 사업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 즉 네나라 모두가 事業 및 地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評價項目과 範圍를 選定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의 경우 環境委員會가 마련한 指針에 따라 연방기관이 스코핑모임, 스코핑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을 하고 있고, 日本은 事業者가 환경영향평가방법의 作成段階에서 해당주민과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 스코핑하며, 獨逸은 承認機關과 事業者가 協議하여 전문가,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스코핑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主務長官이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이드라인 작성이 곧 스코핑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셋째, 住民參與制度에 있어서는 네나라 모두 평가절차의 매 과정마다 住民參與를 保障하고 있는 측면에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 면에서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環境影響評價法이 實體法이기보다 節次法的인 性格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環境影響評價 節次에 있어 환경쟁점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 과정마다 公衆에게

告知되고 意思 決定過程에 통합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NEPA 자체를『환경공개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情報自由化法에 따라 평가관련문제를 公開하도록 되어 있다.

獨逸도 評價節次 每 過程마다 住民參與를 保障하고 있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환경정보법에 의해 평가관련 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日本과 네덜란드의 경우도 유사하게 評價過程別로 住民參與가 保障되어 있는 바,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환경관리법과 정보공개법에 평가관련정보 요구에 대한 公開를 義務化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主務長官이 認·許可 決定時 어떻게 反映하였는지를 주민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일간지, 관보 등에 공시함으로써 인·허가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측면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히 발전된 제도로 손꼽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의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범위, 주민참여 제도 등은 우리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改善点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V. 現行法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現行法制의 問題點

1) 環境影響評價關聯法의 分散

(1) 個別法에 의한 環境性檢討와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

현행 環境影響評價法에서는 具體的인 開發事業에 대해서만 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고 있고, 정책, 계획, 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主要行政計劃에 대해서는 個別法令이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一部 保全地域에 대하여는 開發事業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事前協議를 하고 있다.

立法形式面에서 볼 때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差異가 있으나 實際的인 面에서는 둘 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해당되며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시에도 행정계획에 의한 環境上의 影響과 이에 대한 低減方案 및 代案 등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사전협의의 대상이 行政計劃임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는 個別 開發事業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環境保全法 제정시 환경영향평가제도로서 도입된 事前協議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個別法에 의한 事前協議와는 실제 적용 면에서 본질적이 차이가 없다. 이러한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또는 동일법내의 행정계획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都市計劃關聯 行政計劃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 행정계획들은 타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에 비해 비교적 環境性檢討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14]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기본계획, 재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② 個別法에 사전협의규정이 없는 行政計劃이 많은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15] 등은 환경상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환경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③ 그 외 個別法에 사전협의규정은 있으나 具備書類가 없어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되는 행정계획이 있으며, 個別法에 아예 사전협의대상 行政計劃 自體를 두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16]

(2)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性檢討와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制度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환경성검토와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와 형식적 의미에서는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具備書類 등을 立法化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도 입법기술상의 形式的 差異는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 行政計劃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小規模 開發事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法的 性格이 모호하다. 이러한 사유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가 행정계획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戰略環境評價制度의 일종이면서 開發事業을 包含하는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環境政策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획과 個別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인 행정계획을 구분할 수 있는 基準이 모호하여 同一 法內의 行政計劃들이 서로 다른 법 규정에 의해 사전협의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양태는 다음과 같다.

① 同一法 내에 段階別로 이루어지는 行政計劃들이 어떤 행정계획은 個別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되고, 어떤 행정계획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은 동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다. 이와 유사한 행정계획들이 많아 행정계획에 대한 事前協議法體系가 一貫性을 喪失하고 있다.[17]

② 同一法 內에 있는 유사한 行政計劃들 중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해 사전협의를 받는 행정계획이 있는 반면 아예 對象에서 除外되는 行政計劃이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은 환경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18] 이러한 사례로 인해 동일법내의 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단계별로 동일한 입법체계에 의해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효율적임에도 聯關性이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環境性檢討의 一貫性을 喪失하고 非效率性을 招來하고 있다.

(3) 事前協議制度와 環境影響評價制度間 유기적인 連繫性 問題

一貫性이 없는 關聯法體系 때문에 環境性 檢討의 節次와 體系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行政計劃間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環境影響評價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 이러한 行政計劃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는가가 의심스럽다. 결국은 兩制度가 連繫되어 立法化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별프로젝트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만으로는 基本的인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行政計劃段階에서부터 環境保全政策의 範圍 內에서 關聯 政策이 樹立되고 主要 立地가 檢討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보전지역안에서의 소규모단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立法體系上 問題로 인해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環境性檢討制度의 限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계획에 대한 環境性檢討制度는 個別事業(Project)의 상위단계인 政策(Policy), 計劃(Plan), 프로그램(Program)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戰略環境評價의 일

종이다. 그렇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는 차이점을 타나내고 있는 바, 먼저 대상사업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대상 범위가 폭 넓은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성검토 대상은 주요 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環境性檢討制度는 戰略環境評價制度에 비해 住民意見收斂過程 등이 없음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未導入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시 初期段階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 對象事業을 決定하는 節次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20] 따라서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簡易的으로 推定,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리닝의 목적은 環境影響評價의 對象을 柔軟하게 決定하는데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의 정도가 적을지라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最小化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對象事業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小規模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除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評價項目을 具體化하고 平家範圍를 決定하는 節次이다.[21] 따라서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 스코핑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環境影響 및 環境項目, 代案의 範圍, 事業의 種類 등을 고려하여 決定하는 節次이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22]

우리나라의 경우는 重點評價制度를 運營하고 있으나[2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長點을 살리되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制度改善이 필요한 時點이다.

4) 住民參與의 制限

環境影響評價는 實體法的이라기보다 節次 中心的이다. 評價節次는 嚴格과 適正도 중요하지만 節次 自體의 效率도 문제된다. 한정된 재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절차의 지연과 비효율로 인하여 평가절차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民主的 合意過程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관할 행정청이 地域住民들 또는 利害關係者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계획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 내지 行政的·法的 紛爭에 휘말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절차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當事者들의 參與를 積極 誘導하는 것이 필요하다.[24] 따라서 사전협의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地域住民 또는 利害關係者의 參與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의 경우에는 住民意見을 收斂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도 住民參與 範圍가 制限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 改善方案

1) 環境影響評價法 體系의 一元化

(1) 一元化의 法理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별법 체계에 따른 媒體別 管理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법의 분산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多媒體別 統合管理法이나 統一法典의 제정 작업을 해오고 있는 추세이다.[25]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매체별 오염원 관리의 한계에 따른 다매체 통합관리법의 필요성을 일부 주장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統一法體系 定立에 대한 論議가 微微한 실정이다.

전체 입법구조를 재정립하는 차원의 統一法 마련을 위한 立法的인 論議가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보며, 그 전 단계의 일환으로 개별사안별로 여러 법에 分散되어 있는 法體系는 우선 整備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여러 법에 분산되어 각기 추진되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체계로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環境影響評價法體系의 全面的인 改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個別法에 의한 環境性 檢討의 環境影響評價法 體系內의 受容方案

個別法에 의하여 추진되는 행정계획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行政計劃에[26] 대해서는 반드시 環境專擔機關에 의한 環境性檢討 協議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環境影響評價法에 新設하고, 개별법에서는 計劃樹立時 고려할 環境性 檢討 內容을 행정계획 단계별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 체계내로 수용함으로 인해 事前協議制度와 環境影響評價制度가 有機的으로 連繫되어 운영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법체계상으로 事前協議 段階에서는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代案檢討, 立地妥當性 등에 중점을 두는 戰略環境評價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단계의 個別事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事前協議時의 協議結果를 土臺로 구체적인 環境汚染低減에 重點을 두고 협의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정비함에 있어서도 사전협의가 필요함에도 除外되어 있는 行政計劃들이 追加로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具備書類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新設 또는 補完되어져야 한다.

(3)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性 檢討의 環境影響評價法 體系內 受容方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 행정계획 외에도 보전지역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小規模 開發事業도 포함하고 있는바, 計劃段階에서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과 프로젝트단계에서 이루어지는 開發事業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법체계 내에 구분 없이 규정되므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협의와의 連繫·運營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체계로 일원화 할 경우에도 行政計劃에 대한 평가는 戰略環境評價次元으로 發展시켜 나가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즉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保全地域 內에서의 小規模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立地妥當性 등에 중점을 둔 簡易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環境政策基本法에는 事前豫防機能의 强化 次元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政策方向만 提示하므로써 명실공히 환경정책기본법이 個別 環境法律에 대한 基本法으로서의 基本理念과 哲學을 提示하는 상위법으

로서의 위상을[27]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정비함에 있어서도 同一法內 聯關된 行政計劃들은 모두 대상에 包含되어 행정계획간 연관성 있는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環境性檢討制度의 發展

1980년대 이후 각 국의 정부와 환경영향평가 입안자들은 政策影響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주요 관심사안은 事業段階의 環境影響評價의 限界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持續可能한 開發에 接木시키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戰略環境評價이다.[28]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個別事業(Project)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온 결과 事前豫防이라는 意思決定支援手段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안선택 및 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環境影響評價의 限界性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네덜란드 등과 같은 선진외국에서는 개별사업수준 이상의 단계인 政策, 計劃, 프로그램에 대하여 環境評價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도 戰略環境評價制度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戰略環境評價의 일환으로 環境性檢討制度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法體系面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못해 一貫性 있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획과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획을 環境影響評價法에 別個 章으로 新設하는 戰略環境評價에 吸收하고,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政策, 立法 등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9] 즉, 환경과 관련이 있는 법안, 정책 및 행정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사업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戰略環境評價는 法案의 立案 및 政策·行政計劃의 樹立過程에서 段階別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行政與件 등을 고려할 경우 모든 환경관련법안, 정책 및 행정계획을 환경관서의 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段階別 接近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환경관련법안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立案 및 樹立機關이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입안 및 수립할 수 있도록 機關別 自體 環境性檢討에 대한 立法的인 裝置가 보강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정책과 행정계획은 자체 환경성검토 뿐만 아니라 環境官署에 의한 環境性檢討가 이루어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 및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住民의 意見을 듣도록 함으로써 정책 및 행정계획의 信賴性과 實效性을 확보토록 하며, 현행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므로써 제도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협의된 내용에 대한 反映義務條項의 신설로 實行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導入方案

사업특성이나 지역특성의 고려 없이 一律的으로 事業規模 등에 따라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을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對象事業의 特性과 規模를 考慮한 평가여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評價項目 選定도 住民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과 地域特性이 考慮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법체계 정비시 스크리닝 및 스코핑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에

서 실시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와 EC지침에서 규정한 별표2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조항을 수정하여 대상을 絶對的 評價對象과 相對的 評價對象으로 區分하고, 絶對的 評價對象은 동 법에 따라 당연히 평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相對的 評價對象은 評價對象分類 委員會의 審議를 통해 평가대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평가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評價對象分類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評價對象事業別 範圍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 스코핑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평가서 작성 전에 環境官署와 평가서에 포함할 평가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事前 協議토록 하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評價範圍 및 項目決定委員會를 環境部長官 所屬下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평가대상범위 및 항목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등의 심의시에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조항인 제5조는 폐지하며, 평가범위 및 항목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행정적인 부담과 비효율성 초래의 우려가 있다면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코핑 가이드라인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30]

4) 住民參與의 擴大

住民參與의 基本目的이 환경에 관한 意思決定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별개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나온 의견이나 자료를 生産的으로 利用·增進함에 있기에[3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住民參與 擴大方案으로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만 의견수렴하는 것을 전국적인 大規模 事業이나 지역주민은 살지 않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生態的 價値가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住民 外의 者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評價書 本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에는 주민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 바, 주민 또는 주민외의 자가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의견이 미반영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로 본 평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영여부도 통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2]

이렇게 住民參與範圍를 擴大함과 아울러 住民意見 收斂方法에 있어서도 ① 주민에게 쉽고 迅速하면서도 正確하게 알리는 방법의 강구, ② 설명회와 공청회가 서로 혼동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의 강구, ③ 주민의견 제출범위를 모든 환경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병행하여 강구될 때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33]

다음에는 住民參與의 排除나 歪曲에 대한 救濟方案이 强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먼저 行政的 統制手段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3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協議段階에서 徹底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안으로 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제도와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평가분야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 評價協議 專門機關으로 育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再協議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게 할 필요가 있으며, 變更協議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 변경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폭 넓게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수

렴된 주민의견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事後管理가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협의내용 이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負擔金, 處罰條項을 활용하여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배제 및 왜곡에 따른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초래된 環境上 危害에 대하여는 事業者에 대하여 原狀回復費를 徵求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환경상의 비용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행정적 통제를 통해 구제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司法的 統制手段을 强化하여 보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35] 현재 判例의 立場은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이 개발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상의 이익을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한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학자·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市民訴訟이나 利他的 團體訴訟制度의 導入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36] 헌법상으로 環境權이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권이 행정법 체계내에서 실정법상의 권리로 확립되기 위한 具體的인 下位立法이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행정소송과 관련해서 原告適格 및 義務履行訴訟이 문제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저해받은 자만이 그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환경론자나 환경보호단체가 일정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규제법규상 환경오염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행정기관이 이의 집행을 게을리 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을 때 관계되는 시민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환경규제권을 발동해 주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節次法 및 實體法의 全體構造를 비롯하여 법원, 변호사 등 司法制度의 擔當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검토되어져야 비로소 설득력이 있는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環境影響評價制度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事前配慮의 原則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事前豫防的 制度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수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나라별로 법제도, 행정문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의해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現行法制上의 問題點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별법 등에 각기 분산되어 각개의 법률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해 상호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非效率性 등이 초래되고 있어 동일 법체계 내로 一元化함과 아울러 戰略環境評價와 環境影響評價間의 相互連繫 强化 및 戰略環境影響評價 對象 範圍 擴大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서 該當事業의 特性과 地域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의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은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차원에서 평가대상을 절대적 평가대상과 상대적 평가대상으로 나누고 상대적 평가대상에 대하여만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며, 스코핑제도의 경우는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특성이나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나 항목 등을 결정하게 하되, 양 제도 공히 關聯委員會를 통해서 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環境影響評價의 節次에 있어 핵심적인 절차과정이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에 住民意見收斂節次의 改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있어서는 현재의 초안단계에서의 지역주민에 국한된 차원에서 단계별로 지역주민이외의 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견반영에 대하여 확인·통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住民參與의 排除와 歪曲에 대한 救濟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行政的 統制手段을 강화시키되, 행적적 통제로 구제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司法的 統制手段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參考文獻

1.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국내의 동향과 향후과제(서울: 동화기술), 16~17.
2. 한귀현, 환경법의 기본원리(부산: 세종출판사, 1997);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제25집제2호(1997) 등 참조.
3. 홍준형, 환경법(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44~45.; B. Bender/R. Sparwasser/ A.Engel, Umweltrecht, 3. Aufl. (1995), s. 25f 참조.
4. 최병찬·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론과 실제- (서울: 녹원출판사, 1993), 16.
5. 노재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 발표집(환경청, 1981), 65.
6. 권대준외, 국토이용계획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 환경논총 제7권(1980), 12.
7. 신응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 발표집, 환경청(1981.10), 56.
8. 최상기외,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9), 45~59.
9. 환경부,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편람(1998) 참조.
10. 이상돈, 환경정책법(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참조.
11. 아태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제도(1997); UVPG ; Strateg:c Environmental Apprais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eminar(Lincoln, 1998) ; B. Sadler,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1996) 등 참조.
12.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주거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본방향 설정 연구(1997); 일본 환경청 기획조정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상과 과제(1995); Wood, 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 Comparative Review(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1995) 등 참조.
13. 일본 환경청, 환경백서(2000); 일본 환경청, 일본 환경영향평가법 및 참고자료(1997); 山村恒年, 環境アヤスメント(東京; 有裴閣, 1980) 등 참조.

14. 그 외에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15.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의 경우 환경성검토를 통해 소하천의 자정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개별정비사업에서는 공사시행과정에서의 오염저감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6.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선인정이나 고속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지정등이다.
17. 그 외 농어촌정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산림법, 골재채취법 등에 규정된 행정계획들이 서로 다른법에 의해 연계성 없이 상이한 절차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8. 그 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 한상욱, 지속가능한 개발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 분석"을 위한 세미나(1999), 10.
20. C. Wood, op. cit, 38~41.
21. D. Bear, NEPA at 19: a primer on an old law with solution to new problems Environmental Law Report 19 : 10060-9(1989); CEO 1508. 25. 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논의되어질 환경사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기의 공개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남영숙,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스코핑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수논총 제15권 제2호(한국교원대학교, 1999), 138.
23. 중점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우석, 자연경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 자연보존 103 (1998. 9), 30.
24. 전재경, 환경영향평가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177.
25. 박수혁, 서도이칠란드의 환경법 체계와 그 특색, 환경법 연구 제16권 (1984); 호으스트 젠들러(prof. Dr. Horst Sendler), 김세규 역, 행정절차법과 환경법전, 동아법학 제25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278.; 김세규,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 독일의 환경법제를 중심으로 - (부산: 세종출판사, 1999), pp. 292~294.; 김세규, 법개념으로서의 환경국가;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1996. 6), 401~427 등 참조.
26.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당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정계획들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고 일부 학자들은 경제개발계획 등에까지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에너지 수급계획, 국토개발계획, 수자원이동계획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이 경제개발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정책 전체 방향과 환경기조와의 연계검토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화 방안, 환경과공해 제37호(2000. 7), 35~36 참조.
27. 유지태, 환경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대응방안 연구, 비상근 연구위원 논문집 제8집 (1997), 86~87; 홍준형,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120~122 등 참조.
28. R. Therivel and M.K., Partidario, The Pratice of

SEA(1996), 6.
29. 한상욱・양재경・전숙진・진윤숙,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아태환경・경영연구원(1999); 천숙표, 환경영향평가의 재정립, 환경영향평가 제3권 제2호(1994) 등 참조.
30. 이상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자연보존 103(1998), 3~4.
31. J. Heer, Jr., ct 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Statements(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7), 138~140.
32. 이상돈, 환경관련법률의 개정 방향, 환경과 생명(1994. 7), p. 123에서 평가서 본안단계 에서의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주민 이외의 자의 의견까지 수렴・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3. 김번웅・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의 제도적 문제점과 내용 분석, 환경영향평가 제5권 제1호(1996), 1~13. 참조.
34. 천병태・김영길, 환경법론(서울, 삼영사 2000), 17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요의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2000), 149 등 참조.
35. 조홍식, 환경법소묘 -환경법의 원리, 실제, 환경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법학, 제4권제2호(1998); 동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이행방안에 관한 소고, 환경영향평가정책연구회(1999) 등 참조.
36. 송동원, 미국 환경법상의 시민소송제도, 환경법연구 제10권(한국환경법학회, 1988); 이시윤, 집단소송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인권과 정의(1991. 7); 김홍규, 집단분쟁처리를위한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집단소송의 법리(법무부, 1991); 정동윤, 미국의 당사자 소송, 집단소송의 법리(법무부, 1991); 김성수, 행정법상의 단체소송, 집단소송의 법리(법무부, 1991) 등 참조.

그외 기타

고영훈, 환경법, 서울: 법문사(2000).
구연창, 환경법론, 서울: 법문사(1991).
김대순, EU법론, 서울(199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서울: 형설출판사(1991).
박영도, 입법이론연구 - 입법 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199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박영사(1997).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 이론, 서울: 박영사(1997),
성현찬/한상욱 공역,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서울: 동화기술(1995).
송영일 외, 전략환경평가기법개발 및 중점평가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0).
이상규, 환경판례의 연구, 서울: 삼영사(1993).
조홍식외 2인, 우리나라 환경법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7).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1995).
환경부, 환경관련판례집 (2000), 환경백서(2000), 사전환경성검토업무 편람(2000) 등 .
강성룡,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집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1997).
김번웅/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의 제도적 문제점과 내용분석, 환경영향평가(1996).
박민영, 미국 Class Action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집단소송의 법리(1991).
성현찬, 전략환경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도시기본계획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7).
신봉기, 행정계획과 행정소송적 통제, 법조, (1990),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토지공법연구, 제10집(2000. 8),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송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연구(I)(1993).
전재경, 통합영향평가법의 과제와 전망, 환경과

공해, (2000),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과 생명, 통권24호 (2000) 등.

Audrey, A., Integrating Impact Assessment in the Planning Process: From Rhetoric to Reality, Impact Assessment Bulletin 8(1~2), (1990).

Barney, P. E., The 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Regulations, Land and Water Law Review 16(1), (198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raft Proposal for Directive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olicies, Plan, Programmes(XI/194/90-EN-REV. 4.), Brussels, (1991).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of Australia, Report of the EIA Process Strengthening Workshop, Canberra, (1995).

Jain, R. K.,/Urban, L. T.,/Stacy, G. S.,/Balbach, H. E., Environmental Assessment, New York : McGrow Hill Inc., (1993).

Strategic Environmental Apprais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Lincoln, (1988), (www.planing.detr.uk/sec/index.htm).

Therivel, R., E. and Wilson, S., Thompson, D. Heaney, and D. Pritchar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London: Earthscan, (1992).

Therivel, R., Systems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3, (1993).

Bunge, T., Bauleitplanung in Getrunde L bbe-wolff(Hrsg.), Umweltschutz durch Kommunales Satzungsrecht, (1993).

Webb, W. and L. Siga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Project Appraisal 7(3), (1992).

Wilson, 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valuating the Impact of European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European Environment 3(2), (1993).

Wood, C., EIA in Plan Making, Inp. Wathern(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Theory and Practice, ondon: Unwin Hyman, (1998).

Wood, C. and Djeddour, M.,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A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submitted to th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University of Manchester, (1991).

日本 環境法政策學會編, 新しぃ環境アセスメント法, 社團法人 商事法務研究會(1998).

日本環境廳, 世界の環境アセスメント, (1996), 日本環境影響評價法 및 參考資料(1997) 等.

左藤英善, 住民訴訟の裁判例を見る問題點, ジコリスト 941호(1989).

伊勝眞, ドイツ聯邦共和國における環境保護と團體訴訟, 民商雜誌(80권 2호).